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수급자인원 및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이용정원 : 78명

제1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전에 본인부담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대신할 변동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후 확인을 받을 경우 계약을 대신할수 있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 유효일 까지 한다. 다만, 대상자와 가족의 요청으로 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원할 경우 그 기간만 계약기간으로 정하기로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장기요양대상자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개인정보동의를 할 수있다.

4) 서비스와 관련된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가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 장소: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3)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계약의 해지 등 기타사항

- 가. 계약 해지 사항 :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 한다.
- 나. 또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반환

입소보증금을 받는 규정이 없어 이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6.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 등 관련 사항의 준수를 위하여 각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1)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기간, 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 체결에 따른 고지의 의무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날인을 받는다.

7. 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8.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인부담비율

구분	공단부담금(시군구 지원포함)	본인부담금
일반	80%	20%
경감대상자	88%	12%
	82%	8%
기초수급자	100%	0%
자부담신청자	0%	100%

제20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1. 서비스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나. 건강 및 간호관리

다. 기능회복훈련

라. 시설환경관리

마.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2.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 등급	치매전담가형	일반형
1등급	-	93,070원
2등급	96,950원	86,340원
3-5등급	89,400원	81,540원

식재료비	간식비	기타 비급여항목
한끼 2,500원	하루 2회 1,000원	상급병실료, 의료비, 이 미용비, 특별활동비등

제22조(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3.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입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3조(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치료 의뢰 시 처리 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론케어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3.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질병 상태에 대해 간호사가 상담을 실시한다

나. 보호자와의 상담 후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다.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라. 수급자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을 결정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제24조(기관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수급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제25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어르신의 손해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배상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나.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